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67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고동진·박충권·박준태

박성훈 • 박덕흠 • 백종헌

김대식 · 송언석 · 최수진

서일준 · 임이자 · 성일종

배준영 · 송석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 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 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및 제3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재화등의 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판매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0조의4,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20조의4(재화등의 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판매대 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상품권
	<u>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3. (생략)

② ~ ④ (생 략)

1
<u>제20조의4, 제22조제1</u>
<u>항</u>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